

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,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(안 제8조)
-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 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을 신설(안 제16조의2제3항)
-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36조)
 -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: 100분의 50 (시행일 2006년 1월 1일)
-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함(안 제49조)
- 조례 제558호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삭제
 - 지방세법 개정(2000. 12. 29)으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경과규정의 필요성이 없음.

3. 검토의견

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안 제8조에 대한 의견입니다.

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총 10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여 매 회의 때마다 6명의 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고 그 중 외부 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려 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.

안 제9조, 안 제17조, 안 제26조, 안 제35조, 안 제36조, 안 제37조, 안 제50조는 내용에 부합하는 문구수정, 오·탈자에 의한 자구수정, 입법규정 형식에 따른 정비 등으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 판단합니다.

안 제16조의2에 대한 의견입니다.

제16조의2에서는 지방세 관련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,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 참여확대로 인하여 등기우편 송달 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반송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. 감사원에서도 정기분 납세고지서 중 일정세액 미만은 보통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.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 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
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.

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개정사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안 제49조에 대한 의견입니다.

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(2003헌바16. 2003. 9. 25)에 따라 모든 신고납부 세목을 “신고납부의무 동시이행”에서 “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”하여 적용토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. 본 개정안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.

부칙 제2항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입니다.

본 개정안은 2000. 12. 29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고,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면허세에 대한 경과규정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어 본 부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